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사람사랑” 2호에서 6호는 사랑방의 초기 문제의식을 담았던 글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저희의 초기 문제의식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 글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지금의 사랑방의 사업과 역할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③

#### \* 자료를 축적하는 운동

우선 우리의 인권운동은 자료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희박하다. 외국의 어느 인권운동가는 말했다.

“인권운동이란 그 운동의 과정 자체가 자료 축적의 과정일 수 밖에 없는데 한국의 인권운동은 묘하게도 자료를 호지부지 없애는 운동인 것 같군요...”

우리나라 인권단체 중 아주 풍부하지는 않더라도 자료를 깔끔히 정리하고 여차하면 즉각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단체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고 싶다. 언제나 사건이 터지면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감정적 대응을 하거나 사무실 어느 구석엔가 처박아 놓은 자료를 찾다 못 찾아서 혹은 여기저기 자료를 구하러 다니느라 즉각 대응을 못하고 만 일이 없었는가 묻고 싶다.

자료가 없기도 하지만 흩어져 있거나 정리가 안되어 있다. 그런 자료는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도 자료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노맹 사건의 백태웅씨가 안기부에서의 약물 투여 의혹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약물 투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못한 채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기고 말았다. 그것을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고문에 자주 쓰이는 약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만 있었으면 어찌면 진상을 밝힐 단서라도 잡았을지도 모르고 즉각 효과적인 대응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은 우리의 인권운동사에서 필적감정의 신빙성이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었고, 우리 인권운동에 귀중한 경험을 남긴 사건이었다. 만약에 과거에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그 경험과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면 좀더 나은 결과로 끝났을 가능성은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경험과 기록을 호지부지 없애 버린다면 후일 일어날지도 모를 유사한 사건도 망쳐버리기가 쉬운 것이다. 필적 감정문제는 항상 대형 인권사건에 얽힐 가능성을 가진 문제인 것이다.

어느 인권변호사는 자료 구입비로 한달에 10만원 가량을 지출한다고 한다. 모든 인권변호사, 학자, 인권단체가 한달에 10만원으로 구입한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고 군침을 흘리는 것은 한낱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한편에서는 다급하기가 뭇 빠지게 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거나 심지어는 꼬박꼬박 놓고 있는 ‘쪽제비’와도 같은 작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인권의 모든 양상에 대한 정보는 인권의 보편적인 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이다.

인권에 대한 관심의 빠른 증가는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일치한다”

\*다음호에 계속해서 ④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가?’ ⑤, ⑥ ‘변화를 예감하는 하나의 구상’이 이어집니다.

\*\*\*\*\*

# 사업보고

(6월 둘째주~7월 첫째주)

\*\*\*\*\*

## □ 사무국 논의, 집행 및 결정 구조의 변경 □

\* 기존의 전체회의-결정, 그리고 실장단회의를 통한 기획력 확보의 방식은 제기되는 사안에 긴밀한 대응이 힘들고 총무에 대한 업무의 가중, 전체사업에서의 기획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하루소식팀을 전문화하고 연대실 교육실 자료실 담당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하고 필요한 단위끼리의 충분한 기획회의를 통해 사업의 기동성과 기획력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 UN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 □

\* UN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한국 민간보고서가 7월 6일 드디어 완료되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도 배포되게 될 것입니다.

\* 이 보고서는 저희 사랑방을 비롯해 아동관련 21개 단체들이 모여 지난 3월 15일에 결성한 「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다른 보고서들의 경우 대개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작성된 반면 이 보고서는 현장활동가들과 학계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만들어져 현실상황에 기초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많이 담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올 11월 열릴 사전실무회의와 내년 1월의 본 심사에 정부보고서의 부족함과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보고서가 필요하신 자문위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복사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 아동권 전문가 영국 Ian Neary 교수 내방 □

\* 영국 에섹스 대학의 Ian Neary 교수가 아동권리에 대한 연구차 내한하여 사랑방을 방문하였습니다. Ian 교수는 현재 일본에 1년간 머무르면서 일

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아동인권과 환자의 인권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번 면담에서 한국에서 어린이의 권리실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요인과 두밀리 분교폐교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자리를 함께한 사회사업학과 실습생들과는 대학내의 인권교육과 대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질의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 □ '95 북경여성대회에 관한 특별 초청강연회 □

\* Amnesty-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의 북경여성대회 담당자인 에드나다 아퀴노씨를 초청하여 인권단체, 여성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북경여성대회의 준비사항과 NGO의 과제"란 주제로 강연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이날은 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천주교 여성위원회, 민변등의 단체활동가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 □ 재일한국인 정치범 구원을 위한 전국회의 사무국장 오자와씨 내방 □

\* 위 단체는 재일교포이거나 일본과 관련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 이들은 이번 8.15를 맞아 한국정부에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비롯한 장기수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국회의원 126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 이날 앞으로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한국언론의 활용 등 연대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 □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연대를 위한 아시아 워크샵 참가 □

\* 참여연대, 필리핀 대중민주주의연구소, 영국 카톨릭국제관계연구소가 지난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담시 "급속한경제개발에 관한 워크샵"의 후속작업으로 지난 7월 8~9일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열렸습니다.

\* 이 행사에는 아시아 각국의 활동가 10여명과 아일랜드 노조관계자 2명 국내 참석자 30여명이 모여 인간을 중심에 놓는 사회개발의 중요성, 변화된 세계질서속에서 사회운동이 당면한 도전들, 아시아 민간 사회단체들간의 연대의 중요성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 □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 방한 논평 발표 □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서 인권운동 사랑방은 논평을 발표하여 양심수와 장기수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만델라의 방한일인 7월6일(목) 민가협이 목요일집회에 참가하여 김선명씨를 비롯한 장기수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단체연수, 실습생들 실습중

7월초부터 승실대와 연세대 사회사업학과 학생 7명이 사랑방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오전에는 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오후에는 자료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달동안 실습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서울대 법대학생회에서 단체연수를 다녀갔고, 8월초에는 동국대생들이 단체연수를 올 예정입니다.

재일동포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서명에 참가   
재일동포들의 처우개선을 한국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일본 재일동포단체들이 연명하여 요청해 와 사랑방은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했습니다. 재일단체들은 이 요청을 8월에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제엠네스티 연례 인권보고서 발행

국제엠네스티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례인권보고서 95년판이 도착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신공안정국으로 인해 양심수가 급증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꼭 복사해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알립니다>

○ 이번달 월례 운영위원회는 7월24일(월) 오후 7시에 열립니다. 모든 운영위원들은 이자리에 꼭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추후 알려드립니다.

○ <인권하루소식>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시오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속에 올바르게어나갈 수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에 대한 의견이나 기고할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사랑>은 매월 1일과 15일 발행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운영이나 인권운동 등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좋은 의견은 사람사랑에 게재하겠습니다.

## 6월 회계보고(1일-30일)

\* 5월 이월금 -2,937,889 원

수 입		지 출	
하루소식구독료	1,171,460	활동비	3,360,000
회비	1,760,000	비품구입-컴퓨터	2,300,000
지로입금	3,721,100	청소기	135,000
미확인(회비, 구독료)	130,000	에어콘설치비	358,000
서대표격려금	1,500,000	전화요금	270,380
사무국 외부모금	300,000	자료구입.정보이용료	226,958
후원금(혜진)	300,000	우편발송	410,940
인권교육	60,000	사무비	227,900
차입(백승헌)	500,000	사업비(합본호대금,인권강좌)	746,850
집세(김동한)	300,000	식대	247,300
기타	273,100	집세	375,320
		잡비	370,730
계	10,015,660 원	계	9,029,378 원
		잔액	-1,951,607 원

592-6869  
인민

\*\*\*\*\*

# 자료소식

\*\*\*\*\*

이번에는 <구금과 행형에 관한 일본어 자료①>을 실습니다. 다음호에는 <구금과 행형에 관한 일본어자료②>을 실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인권자료실로 연락하여 대출 또는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警察拘置所での拘禁 - 日本の代用監獄制度』(경찰구치소의 구금 - 일본의 대용감옥 제도)

代用監獄廢止接見交通權確立委員會/1989년 2월 Paker & Jaudel 報告書/107/B/1989/Ja,En 에티오피아 조델 국제인권연맹 사무총장과 카렌 파커 미국 인권변호사가 1988년 11월 일본의 대용감옥 시설을 방문하고 쓴 '일본의 대용감옥 문제와 접근교통권' 보고서. 이 방문보고서는 일본대용감옥폐지접견교통권확립위원회가 국제인권위원회의 장에서 대용감옥 문제를 제기하고 NGO조사단을 요청하고, 이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용감옥 문제가 국제인권B규약 9조 3항에 위반했다는 점, 감옥법 1조 3항의 폐지, 잠정적 조치로서 경찰구류장의 관리를 경찰로부터 법무성으로 이관할 것, 형사소송법 39조 3항의 폐지, 피의자단계의 국선변호인과 보석제도의 창설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대용감옥문제의 국제인권법적, 법률적 접근이 돋보인다.

□ 『新監獄學』(신 감옥학)  
正木 亮/419/B/1968/Ja  
행형 이론서. 수형자를 인간으로 다루며, 구금생활을 인간적인 것으로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자유형의 의의와 종류>, <자유형의 내용과 수인 법률적 지위>, <자유형의 누진제도>, <자유형 집행의 자치제 발생과 의의>를 이론적, 실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 『監獄と人權』(감옥과 인권)

일본변호사협회가 1975년 인권옹호대회에서 <형사피구금자의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보고.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엮은 책. 감옥의 인권보장과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해 깊이 고려하였다. 감옥 속의 인권, 감옥생활, 기율과 징벌, 감옥과 불복신청, 작업, 가석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하고 있다.

□ 『囚人の權利 - ACLUハンドブック』(수인의 권리 - ACLU 핸드북)

原題 : the Rights of Prisoners,/David Ludofsky, Alvin J. bronstein, Edward I. Koren/ 益永利明 譯/150/1985/Ja

'현재의 법률 아래에서 미국의 수형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한 완전한, 최신의 안내서'라는 설명이 붙어 있듯이 <수형자의 법률적 권리>에 대한 해설서이다. 미국시민권연맹(ACLU)에서 발행하였고, 이를 일어로 번역. 적정한 절차, 잔학하고 이상한 형벌의 금지, 교통의 자유와 재판청구권(형무소의 검열문제), 종교적.인종적 차별, 정치적 권리,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의료. 사회복귀와 수인의 신체안전, 구치소의 상황(미결구금), 가석방, 구제수단과 절차, 수인의 권리조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日本の矯正と保護 - 第1巻 行刑編』(일본의 교정과 보호 - 제1권 행형편)

朝倉京一 等 編/362/B/1980/Ja

행형 이론서. 일본 행형의 전반을 다룬 책이다. 행형의 역사, 행형 시설의 변천과 현황, 교정직원의 지위와 연수, 사법적 처우의 변모와 자유형, 누진제와 분류제, 보안과 규율, 형무작업, 교육과 여가활동, 의료.정신장애자의 처우, 종교 敎誨, 각 분류별 처우, 행형의 公衆참가, 피수용자의 법적 지위, 미결구금, 감옥법 개정, 국제회의와 교정.보호 등 각 주제별로 분리하여 집필했는데, 필자들은 교정관이나 형무소장 등 일선 형무소의 관리자